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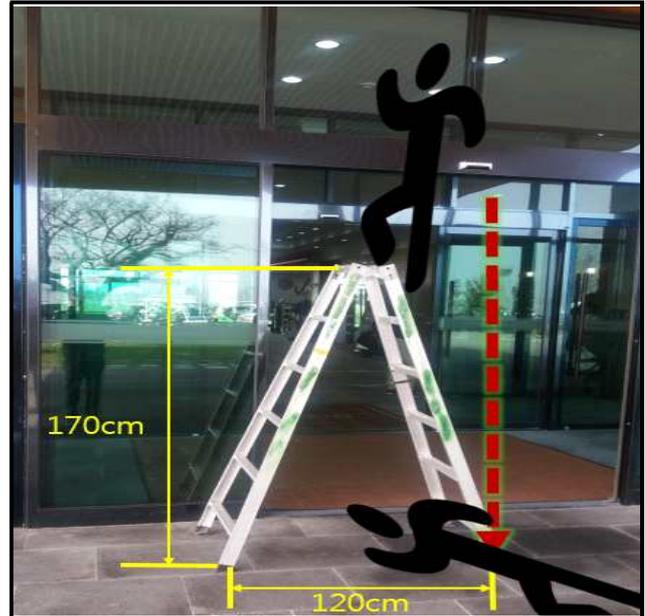
#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A형 이동식사다리 최상단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짐

(중부분부 2018-21-51-003)

## 재해개요

○ 2018. 1. 30(화) 13:12경 ○○○골프클럽하우스 정문 출입구에서 재해자가 출입문 상부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A형 사다리(약 1.7m)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함

## 재해상황도



## 재해발생 원인

### ○ 부적절한 사다리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

-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함.
- 또한, 사다리 하단부에 손상된 부분이 있어(손상시기 불확실) 재해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
- 사다리 작업 시에는 상단으로부터 3단 이하의 발판까지만 올라가며 신체가 사다리에 밀착된 조건에서 한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조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
- 이동식 사다리의 전도, 미끄러짐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조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는 등 2인1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독작업으로 수행함

### ○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

- 사다리 사용 작업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함

## 재해예방대책

### ○ 작업발판 설치 철저 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】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.

### ○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】

- 사다리 사용 작업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함